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5조 (입학 관련 위원회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단,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. <신설 2017.02.14.></p>	<p>제15조 (입학 관련 위원회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단,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<u>입학취소일을 기준으로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함.</u> <신설 2017.02.14.>, <개정 2021.00.00></p>	(조항 개정)
	<p>16조의2 (입학취소)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</u> 2. <u>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</u> 3. <u>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·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</u> 4. <u>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</u> 	(조항 신설)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9조 (편입학)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<u><개정 2016.02.02.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. 일반편입학은 4년제 정규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<개정 2016.02.02.> 	<p>제19조 (편입학) 편입학은 학사편입학과 일반편입학으로 구분하며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<u>단, 외국인유학생전형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입학내규 기준을 적용한다. <개정 2016.02.02., 2021. 00. 00.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. 일반편입학은 4년제 정규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<개정 2016.02.02.> 	<p>(조항 수정)</p>